

---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 · LPG 확대지원 안내서

---

2026. 1.



# 목 차

<b>I</b>	<b>등유·LPG 확대지원 안내</b> .....	7
	1. 확대지원 개요 .....	9
	2. 수급자 선정 및 관리 .....	15
	3. 카드 발급 및 사용 .....	25
	4. 주요 서식 .....	37
<b>II</b>	<b>FAQ(자주 묻는 질문)</b> .....	49
	1. 확대지원 개요·지원대상·지원금액 관련 .....	51
	2. 수급자 선정 관련 .....	56
	3. 수급자 정보 변경 관련 .....	59
	4. 카드 발급·사용 관련 .....	60
	5. 예외지급 관련 .....	66
<b>III</b>	<b>등유·LPG 확대지원 시스템 매뉴얼</b> .....	67
<b>IV</b>	<b>선불카드 기명화 시스템 매뉴얼</b> .....	73



---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 · LPG 확대지원 안내

---

2026. 1.



# **I . 등유·LPG 확대지원 개요**



# 1. 확대지원 개요

□ (지원목적) 겨울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

\* 겨울철 취약계층 : 난방에너지원 중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인상으로 영향도가 높은 등유·LPG 사용 세대

□ (시행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법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대통령 지시\*\*에 따른 등유, LPG 사용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 발표 ('25.12.24, 경제관계장관회의)

\*\* 난방비 등 서민의 겨울나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및 재원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로 선정기준일 시점에 아래의 선정기준(대상 ①~③)에 해당하는 세대(단,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선정기준)

◆ (기본방향) '25년도 등유·LPG 사용실적에 기반하되, 당해연도 사용실적이 없더라도 '24년도 사용이력 등을 자격판정에 종합적으로 고려

- 아직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 및 사용기간이 짧아 사용이 저조한 세대 등

\* 바우처를 하절기에 전액 소진하거나 혹한기에 집중 사용예정 등

◆ (선정기준일\*) 1차(1/9), 2차(2/20), 3차(3/20), 4차(5/25)

\* 지원대상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 종료일(선정 결과는 별도 안내)

- 설 연휴(2/14~18) 전 배부, 추가지원 소외세대 최소화\* 등 고려하여 총 4차 선정

\* 지자체 확인 등으로 파악한 등유·LPG 사용세대(선정기준 대상 ③)는 2~4차 선정 시 포함 예정

- 1~3차 선정 수급세대는 선불카드 사용, 4차 선정 수급세대는 예외지급 신청

○ (대상 ①)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에서 최근 구입\*한 연료가 등유·LPG이거나 등유·LPG를 주로 이용\*\*한 세대

\* 선정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구입일

\*\* 총 바우처 사용금액 중 50% 이상을 등유·LPG구입에 사용('25.10.1.~선정기준일까지의 실적)

○ (대상 ②) '25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력은 없으나,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에서 마지막 구입 연료가 등유·LPG이거나 등유·LPG를 주로 이용\*한 세대

\* 총 바우처 사용금액 중 50% 이상을 등유·LPG구입에 사용('24.10.1.~'25.5.25.까지의 실적)

- (대상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등유·LPG로 주 난방하는 세대로 파악(지자체 확인 등)된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① 등유·LPG 이용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일까지 **전출입(난방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 등유·LPG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세대(전입지의 난방에너지원 확인 필요)\***  
\* 단, 전입지의 주 난방에너지원이 등유·LPG로 확인된 세대는 추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②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 바우처를 사용하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이용 세대**
- ③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5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④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5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 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⑥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지원내용·방법) 난방용 등유·LPG 구입 이용권(선불카드)\* 147,000원 지원**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없음)

\* 기존 사용 중인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별도 카드 배부

- 에너지바우처로 등유·LPG 구입이력이 확인된 세대(대상 ①, ②)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대상으로 자동 선정

□ **(발급기간) 2026년 1월 22일(목) ~ 2026년 5월 22일(금)**

- 카드 수령을 위한 일시적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쓸림 방지를 위해 **대상자별 수령 시작일을 지정하여 순차 안내(문자·우편발송 등) 추진**

**<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 안내 및 선불카드 배부(안)\* >**

선정 차수 (선정기준일)	선정 대상자 문자·우편 안내 (에너지공단)	선불카드 배송(카드사→읍·면·동)		선불카드 배부 (읍·면·동→대상자)
		발송일(예정)	도착일(예정)	
1차(1/9)	1/21~ (순차 안내)	1회 1/13(10만 장)	~1/16	1/22~ (순차 발급)
		2회 1/20(5만 장)	~1/23	
		3회 1/27(5만 장)	~1/30	
2차(2/20)	2/27~	2/19(필요시)	~2/24	3/3~
3차(3/20)	3/27~	3/19(필요시)	~3/24	3/30~
4차(5/25)	5월말(예정)	해당 없음 (예외지급 신청 대상 : 신청사유, 지급기준 충족 시 사후 지원)		

\*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선정 대상자가 많은 읍·면·동(200세대 초과)은 5월(1/22~1/28) 또는 10월(1/22~2/4) 간 분산\*하여 대상자에 안내 및 카드 순차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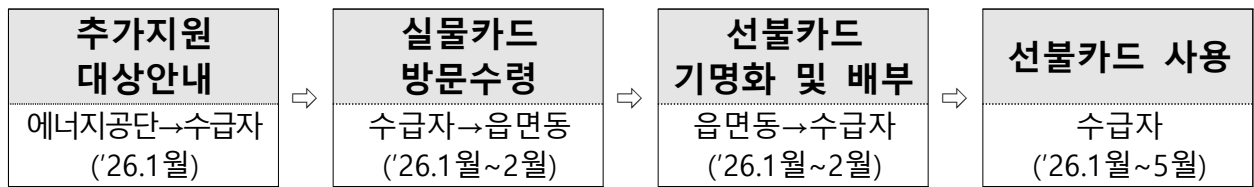
\* (순차 배부기준) 200세대 초과~400세대 이하는 5월(1/22~1/28), 400세대 초과는 10월(1/22~2/4) (200세대 이하는 해당 없음)

-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률이 높은 세대(잔액 0원), 추가지원 시급성이 높은 세대(노인, 장애인, 다자녀 등) 등에 우선 배부

□ (사용기간\*) 2026년 1월 23일(금) ~ 2026년 5월 25일(월)

\* 수급자는 카드 수령일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5월 22일(금)까지 기명화 등록을 완료한 카드에 한하여 5월 25일(월)까지 사용 가능

- (추진체계) 등유·LPG 추가지원 안내(문자·우편 등 에너지공단 발송)를 받은 수급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확인 및 선불카드 기명화 작업 후 카드 배부



- (예외지급) 4차에 선정된 지원대상(발급제한), 고지서 요금 납부 시 카드 사용불가(사용제한) 등에 해당하는 등유·LPG 이용세대가 예외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확인될 경우에 後 지급 예정

**[참고]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기준**

-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상의 착오·지연,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 거동 불편 또는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경우

**참고**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구입비 확대지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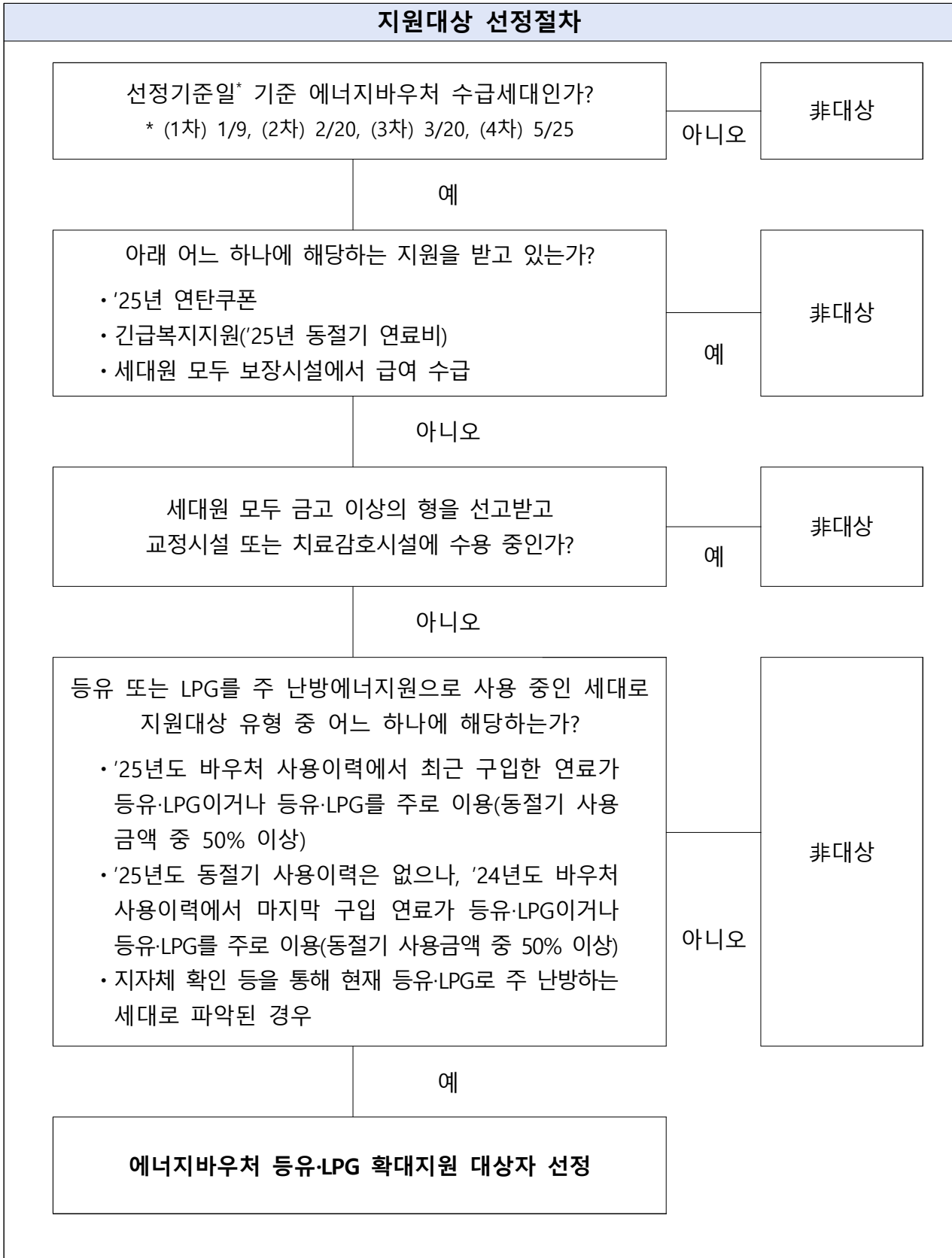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요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하며, 선정기준일 시점에 아래 선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난방환경 변화가 없으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57 483 427 555">선정 기준</th> <th colspan="2" data-bbox="427 483 1203 555">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th> <th data-bbox="1203 483 1442 555">거주지(난방환경) 유지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7 555 427 658">①</td> <td data-bbox="427 555 587 658">'25년도 에너지바우처</td> <td data-bbox="587 555 1203 658">선정기준일에서 최근 구입한 연료가 등유·LPG 등유·LPG 구입금액이 동절기 총 사용금액의 50% 이상</td> <td data-bbox="1203 555 1442 658">구입일~선정기준일 '25.10.1.~선정기준일</td> </tr> <tr> <td data-bbox="357 658 427 790">②</td> <td data-bbox="427 658 587 790">'24년도 에너지바우처 ('25년도 동절기 사용이력X)</td> <td data-bbox="587 658 1203 790">선정기준일에서 마지막으로 구입한 연료가 등유·LPG 등유·LPG 구입금액이 동절기 총 사용금액의 50% 이상</td> <td data-bbox="1203 658 1442 790">구입일~선정기준일 '24.10.1.~선정기준일</td> </tr> <tr> <td data-bbox="357 790 427 869">③</td> <td colspan="2" data-bbox="427 790 1203 869">①, ②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확인 등을 통해 현재 등유·LPG로 주 난방하는 세대로 파악된 경우</td> <td data-bbox="1203 790 1442 869">확인일~선정기준일</td> </tr> </tbody> </table>	선정 기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		거주지(난방환경) 유지 여부	①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선정기준일에서 최근 구입한 연료가 등유·LPG 등유·LPG 구입금액이 동절기 총 사용금액의 50% 이상	구입일~선정기준일 '25.10.1.~선정기준일	②	'24년도 에너지바우처 ('25년도 동절기 사용이력X)	선정기준일에서 마지막으로 구입한 연료가 등유·LPG 등유·LPG 구입금액이 동절기 총 사용금액의 50% 이상	구입일~선정기준일 '24.10.1.~선정기준일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확인 등을 통해 현재 등유·LPG로 주 난방하는 세대로 파악된 경우		확인일~선정기준일
	선정 기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		거주지(난방환경) 유지 여부													
	①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선정기준일에서 최근 구입한 연료가 등유·LPG 등유·LPG 구입금액이 동절기 총 사용금액의 50% 이상	구입일~선정기준일 '25.10.1.~선정기준일													
②	'24년도 에너지바우처 ('25년도 동절기 사용이력X)	선정기준일에서 마지막으로 구입한 연료가 등유·LPG 등유·LPG 구입금액이 동절기 총 사용금액의 50% 이상	구입일~선정기준일 '24.10.1.~선정기준일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확인 등을 통해 현재 등유·LPG로 주 난방하는 세대로 파악된 경우		확인일~선정기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일) <sup>1차</sup>'26. 1. 9.(금), <sup>2차</sup>'26. 2. 20.(금), <sup>3차</sup>'26. 3. 20.(금), <sup>4차</sup>'26. 5. 25.(월)</li> </ul>																	
지원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함</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등유·LPG 이용실적 발생일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일까지 <b>전출입(난방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 등유·LPG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세대</b>(전입지의 난방에너지원 확인* 필요) * 단, 전입지의 주 난방에너지원이 등유·LPG로 확인된 세대는 추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li> <li>②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 바우처를 사용하는 <b>가상카드(요금차감) 이용 세대</b></li> <li>③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b>'25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b></li> <li>④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b>'25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b></li> <li>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b>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b></li> <li>⑥ 세대원 모두가 <b>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b></li> </ul> </div>																
지원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등유·LPG 구입 전용 선불카드 147,000원 지원</li> <li>▶ (지원방법) 실물카드로 등유·LPG 구입이력 보유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정</li> </ul>																
발급 및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기간) '26. 1. 22.(목) ~ '26. 5. 22.(금)</li> <li>▶ (사용기간) '26. 1. 23.(금) ~ '26. 5. 25.(월)</li> <li>※ 카드 수령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 5.22(금)까지 기명화 완료 시 5.25(월)까지 사용 가능</li> </ul>																
발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 (카드사에서 읍·면·동으로 발송 → 담당 공무원이 기명화(사용자 등록)하여 수급자 배부)</li> </ul>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유, LPG 판매소에서 카드 결제</li> </ul>																
사용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사 가맹점 중 등유, LPG 판매소</li> </ul>																
예외지급 (사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li> <li>▶ 행정상의 착오·지연,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li> <li>▶ 거동 불편 또는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경우</li> </ul>																

## 2. 추진체계

### 1

###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정(안)
시행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공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시행 안내</li> </ul>	'26.1월초
담당 공무원 정보 현행화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 공무원 정보 현행화 (인사이동 반영, 카드사 시스템 이용&amp;선불카드 수령 등)*</li> <li>*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 <a href="http://energyv.or.kr/workp">energyv.or.kr/workp</a></li> </ul>	~'26.1.13.(화)
대상자 조회 및 시스템 오픈 (에너지공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유·LPG 추가지원 대상자 조회 및 관리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업무포털 별도 탭 오픈</li> <li>- 차수별 대상자 명단은 선정기준일 이후 조회* 가능</li> <li>* 선정 명단 게시일(예정) : (1차) 1/16, (2차) 2/27, (3차) 3/26, (4차) 5/28</li> <li>■ 선불카드 기명화 등록 전용 카드사 시스템 오픈</li> </ul>	'26.1.16.(금)
선불카드 배송 (카드사→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유·LPG 확대지원 전용 선불카드 배송</li> <li>- 도착일정(안) : 1차(~1/16, 10만장), 2차(~1/23, 5만장), 3차(~1/30, 5만장)</li> <li>■ 담당 공무원(부재 시 대리인 必) 수령 및 카드 수량 확인</li> </ul>	1차'26.1.16.(금) 2차'26.1.23.(금) 3차'26.1.30.(금)
대상자 안내 (에너지공단→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 우편 등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개별 안내</li> </ul>	'26.1.21(수) ~
선불카드 발급 (읍·면·동→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기명화 작업 및 수급세대 배부</li> </ul>	'26.1.22(목) ~ 5.22(금)
선불카드 사용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유·LPG 확대지원 전용 선불카드 사용*</li> <li>* 본인카드 수령일 다음 날부터 가능</li> </ul>	'26.1.23(금) ~ 5.25(월)
지원대상 추가 선정 요청 (지자체→에너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요청 명단* 제출 (읍·면·동→시·군·구 승인→에너지공단 확인)</li> <li>* 선정기준 충족 시 2차(2/20), 3차(3/20), 4차(5/25) 선정 명단에 포함</li> </ul>	'26.2~5월
예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의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 예외 지급</li> </ul>	'26.6~8월 (예정)



## Ⅱ. 수급자 선정 및 관리



# 1. 수급자 선정 및 관리

## 1

### 선정방법 및 대상

#### □ 선정방법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 기반으로 등유·LPG가 주 난방원으로 판단되는 수급세대를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으로 전담기관(에너지공단)에서 선정
  - 2025년도 사용실적을 우선하되, 선정시점까지 바우처를 미사용한 경우를 고려하여 2024년도 사용실적까지 확대 검토
  - 선불카드 사용기간 중 변동성(바우처 사용현황, 수급세대 정보 등) 반영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총 4차에 걸쳐 지원대상 선정 추진
- 거주지 난방환경 변경(전출입, 결제수단 변경(실물카드→가상카드) 등)이 발생\*한 수급세대는 지원대상 선정 시 제외
  - \* 대상 기간 : 등유·LPG 이용실적이 발생한 날 ~ 선정기준일
  - 단, 현재 등유·LPG로 주 난방하는 세대로 파악(지자체 확인 등)된 경우는 추후 지원대상으로 선정(2~4차) 될 수 있음

#### □ 선정기준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로 선정기준일 시점에 아래의 대상(①~③)에 해당하는 세대(단,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대상 ①)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에서 최근\* 구입한 연료가 등유·LPG이거나 등유·LPG를 주로 이용\*\*한 세대
    - \* 선정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구입일
    - \*\* 동절기 총 바우처 사용금액 중 50% 이상을 등유·LPG구입에 사용('25.10.1.~기준일까지의 실적)
  - (대상 ②) '25년도 동절기 사용이력은 없으나,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에서 마지막 구입 연료가 등유·LPG이거나 등유·LPG를 주로 이용\*한 세대
    - \* 동절기 총 바우처 사용금액 중 50% 이상을 등유·LPG구입에 사용('24.10.1.~'25.5.25.까지의 실적)
  - (대상 ③) 대상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등유·LPG로 주 난방하는 세대로 파악(지자체 확인 등)된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① 등유·LPG 이용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일까지 **전출입(난방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 등유·LPG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세대**(전입지의 난방에너지원 확인 필요)\*
  - \* 단, 전입지의 주 난방에너지원이 등유·LPG로 확인된 세대는 추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②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 바우처를 사용하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이용 세대**
- ③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5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④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5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 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⑥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선정기준일** : (1차) '26년 1월 9일(금)      (2차) '26년 2월 20일(금),  
 (3차) '26년 3월 20일(금)      (4차) '26년 5월 25일(월)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 선정(안)\* - 선정기준일별**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선정기준일	'26.1.9.(금)	'26.2.20.(금)	'26.3.20.(금)	'26.5.25.(월)
바우처 사용이력 ( '25년 동절기 기준)	'25.10.1. ~'26.1.9.	'25.10.1. ~'26.2.20.	'25.10.1. ~'26.3.20.	'25.10.1. ~'26.5.25.
지원대상 선정규모	18만 세대	2만 세대 (누적 20만 세대)	미정 (누적 20만+@세대)	
지원방식	선불카드 배부·사용			예외지급 신청

\*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선정기준 관련 참고사항**

- 선정기준일까지의 '24, '25년도 바우처 사용이력(등유·LPG 구입이력)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1차에 미선정되었더라도 2~4차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수급자 정보변경(전출입 등) 및 바우처 사용이력 부재 등으로 대상 ①, ② 미해당 세대이더라도 대상 ③으로 확인 시 추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4차 선정된 세대는 예외지급 신청 대상\*이며, 예외지급 기준(지원금 범위 내 자부담 등) 충족 여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해 지원(사후정산) 예정
  - \* 선정기준일(5/25)이 선불카드 사용기한 및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과 동일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 공무원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energyv.or.kr/workp](http://energyv.or.kr/workp))에 접속하여 “에너지바우처 관리” - “수급자현황(등유·LPG 확대지원)” 메뉴에서 **관할 지역 내 지원대상 명단\*** 조회 가능

\* 선불카드 기명화 등록 시스템([energy.rndcard.com](http://energy.rndcard.com))에서도 조회 가능하나, 해당 시스템 이용권한 부여를 위한 담당자 정보등록 후에 이용 가능

- 시스템 이용방법은 “**Ⅲ. 등유·LPG 확대지원 시스템 매뉴얼\***” 참고

\* 향후 시스템 메뉴 오픈, 지원기간 중 기능 개선 등에 따라 현행화하는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을 통해 게시 예정

- **등유·LPG 확대지원 시스템 메뉴 오픈(예정) : '26. 1. 16.(금)**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내 담당자 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E-mail 등) **현행화** : ~ '26.1.13.(화)

\* 상기 기간 이후에 인사이동 등에 따른 담당자 변경 발생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함

- 차수별(1~4차) 선정 **대상자 명단**은 담당 공무원이 조회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현행화\*** 예정

\* 지원대상 선정 명단 게시일(예정) : (1차) 1/16(금), (2차) 2/27(금), (3차) 3/26(목), (4차) 5/28(목)

## □ 등유·LPG 확대지원 선정 대상자

- **(1~3차 선정)** 지원대상에 발송하는 **안내문자·우편**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을 통해 **1/21(수)부터 확인** 가능

- 일시적 행정복지센터 방문 쏠림 방지를 위해 대상자별 카드 수령 시작일을 지정하고, 수령 시작일 1일 전\*에 선정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예 :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세대로 지정된 카드 수령 시작일이 1/27(화)인 경우, 수령 시작일 전날인 1/26(월)에 안내문자 발송

- **(4차 선정)** 지원 대상자에 발송하는 **안내문자**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5월 말(예정)부터 확인** 가능

- 4차 선정 지원대상은 선불카드가 아닌 예외지급(사후정산) 신청을 통해 지원하므로 예외지급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

**< 선정 차수별 지원대상 안내문자 발송(안)\* >**

구 분	문자 내용(예시)
1~3차 선정 (선불카드 사용)	<p>제목 :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자 선정(0차) 안내</p> <p>안녕하십니까, ○○○님의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0월 00일(○) 이후에 거주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p> <p>※ 지정일 이전에 방문 시 대기자가 많아 카드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p>
4차 선정 (예외지급 신청)	<p>제목 :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자 선정(4차) 안내</p> <p>안녕하십니까, ○○○님의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0월 00일(○) ~ 0월 00일(○) 중으로 거주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유·LPG 구입비용 예외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 신청 시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예외지급 대상에서 최종 제외될 수 있습니다.</p>

\*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자 발송(안) 예시로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발송 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사전 공유 예정)

**3 지원대상 추가 선정 요청(대상 ③) 및 관리**

**□ 추가 선정 목적**

- 변동성(바우처 사용현황, 수급세대 정보 등) 반영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 외 수단을 활용하여 선정기준(대상 ③) 해당 세대 발굴**

**□ 추가 선정 방안**

- **(에너지공단)**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등)를 통해 바우처 시스템으로는 조회되지 않는 난방용 등유·LPG 사용세대 확인
- **(읍·면·동)** 복지 담당부서 협업, 공적(公的) 네트워크 활용, '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예외지급 세대(등유·LPG 구입&거주지 유지) 등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관내 등유·LPG 사용세대를 적극 발굴하여 추가 선정 요청

□ 추가 선정 요청절차(지자체 확인 기준)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발굴한 세대가 현재 등유·LPG로 난방 중임을 확인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energyv.or.kr/workp)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 요청

- 미선정 상태 수급자가 선정기준(대상 ③)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 '[서식 3]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 하고 현재 등유·LPG로 난방하는 세대인지 여부를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 1]) 접수 필수, 접수서류는 읍·면·동에서 자체 보관

**[대상세대 자격요건 확인사항(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

① (기본요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② (난방에너지원)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세대

(공무원 및 관내 이·통장 등 공적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필요)

- ※ 난방에너지원 확인은 현장조사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난방에너지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예. LPG 배관망 사업 대상에 해당하여 시·군·구에서 대상세대의 난방에너지원 파악이 가능한 경우)
  - 대상자 주거환경 확인이 용이한 지역 내 공적 네트워크(인력)를 활용하여 주 난방에너지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
  - '24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이면서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유선 등을 통해 등유·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한 경우 등

- 대상 ③ 해당 세대는 2월 2주차(예정)부터 5.25.(월)까지 상시 등록\* 가능

\*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시·군·구) 읍·면·동에서 요청한 명단에 대해 승인 처리(읍·면·동 등록일~5/25)
- (에너지공단) 승인(시·군·구)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선정일에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자로 선정, 반영 예정

□ 등유 및 LPG 사용 여부 확인

- 신청 접수 시 난방용 등유 및 LPG 사용세대 여부 확인 필요
- 시·군·구 석유·가스 담당 부서의 협조 필수

[ 보일러 사용 확인 방법(예시) ]

- ① 대상자 본인 확인 및 현장 방문
- ② 난방에너지원 확인이 가능한 기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주거환경 확인
  - LPG 배관망 사업 대상에 해당하여 대상세대의 난방에너지원 파악이 가능한 경우 등
  - '24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유선 등으로 확인
  -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해당 대상자 조회가 가능(단, 난방에너지원 등 내용 확인 필요)
- ③ 대상자 주거환경 확인이 용이한 관내 인적자원 활용
  - 이·통장협의회를 통한 대상자 보일러 사용 유무 및 현장 확인 협조 요청
  - 관내 복지기관 인적자원(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 노인종합복지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센터(요양보호사), 장애인복지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활동보조인), 재가노인복지센터(요양보호사))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보일러 확인 협조 요청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한 대상자 보일러 확인 협조 요청

○ (참고) 등유 및 LPG 보일러 예시



## □ 이사 등 전출입 시

- **(수급자)**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전출입 시에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 재사용 신청
  - 전입지 난방환경을 유지(등유·LPG 사용)하고, 선불카드(잔액 有)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서식 4]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 재사용 신청서'(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포함)를 제출\*해야 함
    - \* 등유·LPG 선불카드는 전입지 변경이 확인되면 사용중지(자동)되므로 재사용 신청 필수
  - 등유·LPG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해야 함
  - 난방여건 변화(등유·LPG 미사용)가 발생했음에도 등유·LPG 구입에 선불카드 잔액을 계속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대상임
- **(읍·면·동)** 수급자의 전입지 난방환경 유지(등유·LPG 사용) 여부를 확인 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선불카드 재사용 신청 처리('재신청' 버튼 클릭)
- **(시·군·구)** 수급자격을 검토한 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시스템에서 선불카드 재사용 신청 최종 승인

## □ 수급자 사망 시

- **(수급자)** 수급자의 세대원(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등유·LPG 선불카드 사용자 포함)를 세대원 본인으로 변경 신청
  - 사망으로 인한 재신청 시,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유지\*
    - \* 수급자 변경 후 기존 잔액 사용 가능
- **(읍·면·동)** 수급자의 사망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에 행복이음에서 에너지바우처 정보변경 신청 접수
- **(시·군·구)** 수급자격을 검토한 후 행복이음에서 정보변경 신청 최종 승인 및 수급자에게 통보



## Ⅲ. 카드 발급 및 사용



# 1. 등유·LPG 전용 선불카드 발급

1

## 등유·LPG 전용 선불카드 발급 및 배부

□ 등유·LPG 전용 선불카드 발급(카드사 제작·발송→읍·면·동 수령)

- (에너지공단) 지원 대상 명단 확정 및 선정·수령 기간 안내(문자·우편)
  - 바우처 사용이력(등유·LPG 구입) 기반으로 선정한 지원대상 명단을 카드사에 제공
  - 선불카드 배부 초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쓸림 현상 방지를 위해 대상 여부, 방문·수령 기간에 대해 지원 대상별 문자·우편으로 별도 안내
  - \*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문자서비스 제한, 스팸 차단 등)를 고려하여 에너지 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대상 여부 및 방문 기간 등 안내 서비스 운영
- (카드사) 충전식 선불카드(무기명) 제작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발송
  - \*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지원 대상의 거주지 기준 관할 행정복지센터이며, 해당 배송지 주소, 받는 사람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업무 포털 기준으로 발송
  - 단, 1차 선정 지원대상에 배부할 선불카드(20만 장)는 제작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총 3회에 걸쳐 순차 배송 추진
  - 카드 재발급(분실·훼손)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배송체계 운영\* 등으로 수급세대의 선불카드 수령·사용 불편 최소화
  - \* (읍·면·동) 배송현황 등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공무원 전용, ☎1600-3192)로 문의

### < 등유·LPG 선불카드 발송 계획(안) >

선정 차수 (선정기준일)	선불카드 배송(카드사→읍·면·동)			비고
	총 배송수량	발송일(예정)	도착일(예정)	
1차(1/9)	10만장	1/13	~1/16	에너지바우처 업무 포털 읍·면·동 담당자 최신화 필요 (반송 최소화)
	5만장	1/20	~1/23	
	5만장	1/27	~1/30	
2차(2/20)	변동*	2/19	~2/24	
3차(3/20)		3/19	~3/24	
4차(5/25)	해당 없음			

\* 에너지바우처로 등유·LPG를 구입한 이력이 없어 1차 선정되지 않은 세대 중 지자체 확인 등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하는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시 배송

□ 등유·LPG 전용 선불카드 배부(읍·면·동→지원대상)

- (읍·면·동) 카드사에서 배송된 선불카드(주황색) 수량 확인, 관내 지원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기명화 등록 및 배부

- 배부기간 : 2026.1.22.(월) ~ 5.22.(금), 4개월

※ (참고) 등유·LPG 확대 지원 대상자 전용 선불카드 실물



- 카드 수령(1~3차) 시마다 관내 지원대상 수(에너지공단 사전 안내\*)와 배송된 카드 수량이 동일한지 확인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energyv.or.kr/workp), 신한카드 기명화 시스템(energy.rndcard.com)

※ 신한카드 기명화 시스템(1/16 이후 접속 가능)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최근 접속 담당자(읍·면·동별) 기준으로 계정 생성 예정(~1/13까지 접속·최신화 필수)**

: 최초 접속 시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확인→계정 변경. 추가 계정이 필요한 경우는 [energyv@energy.or.kr](mailto:energyv@energy.or.kr)로 담당자 이름 및 본인 이메일 주소(정부 도메인 계정 필수) 안내 필요

- 관내 지원대상 수보다 적게 수령한 경우, 시·군·구로 필요수량을 요청 (별도 조사기간 안내 예정)하며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에너지공단으로 전달
- 선정된 지원대상자 방문 시, 카드사 기명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 정보 확인 및 기명화\* 후 선불카드 배부

\* 시스템 이용방법은 "IV. 선불카드 기명화 시스템 매뉴얼" 참고

- 선불카드 기명화 시스템 이용 문의(공무원 전용) : ☎1566-0369

**[선불카드 수령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자별 확인 필요사항]**

- ① (대상자 본인 방문) 카드사 기명화 시스템에 대표로 등록 되어있는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경우
- ② (동일 세대원 방문) 카드사 기명화 시스템에서는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 정보로는 대상자 확인이 불가하나, 행복이음 또는 에너지바우처 업무 포털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 ③ (대리 수령인 방문) ①, ②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제3자로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과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자가 서명/날인한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한 경우

※ (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유·LPG 선불카드 배부 관리 사항 정리

[선불카드 기본 사항]

- 등유·LPG 구입 전용 선불카드 147,000원 지원(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별 1장)
- 배부기간 : 2026.1.22.(목) ~ 5.22.(금)
  - 수급자는 선불카드 수령일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

[선불카드 택배 수령·배부 순서]

- ①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최신화)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기준으로 ①카드 배송지, 받는 사람(담당자명, 핸드폰 연락처), ②신한카드사의 기명화 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해당 담당자 메일로 발송할 예정으로 담당자 정보 최신화 필수 (미수령, 시스템 접속 오류 등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 최우선 고려 필요)
- ② (카드 수령 및 수량 확인) ①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또는 ②신한카드사 기명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불카드 배부 수량 사전 확인 → 신한카드에서 발송한 선불카드를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본인 또는 대리 수령\* 이후 지원 대상자 수와 동일 여부 확인 → (추가 배송 필요시) 시·군·구 조사기간 내 부족한 수량만큼 요청
  - \* 카드 배송현황(운송장 기준) 등은 에너지공단에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나, 발송 회차별 도착일까지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공무원 전용, ☎1600-3192)로 확인 필요
- ③ (카드 기명화) 신한카드 기명화 시스템(energy.mndcard.com) 접속\* → 방문자의 신분증 확인 → '대상자 관리'에서 방문자 신분과 동일한 해당 대상자 여부 확인(식별번호 복사) → '카드 등록'에서 해당 대상자의 식별번호 입력 후 배부할 선불카드의 카드번호(16자리)와 카드번호 확인(카드 뒷 8자리) 입력 및 저장(기명화 시스템 사용문의 ☎1566-0369)
  -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energyv.or.kr/workp) 공지사항에서 각 읍·면·동에 할당된 아이디 및 임시 비밀번호 확인 후 접속하며, 최초 로그인 시 이메일 인증 필수
- ④ (카드 배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내 게시판 현황>자료실>'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관련 서식' 중 "[서식2]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인수대장" 출력 및 대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 대리 수령인) 서명 → 대상자에게 카드 사용 유의사항(부정수급 등) 및 카드 사용 가맹점 확인 방법 안내 후 배부
- ⑤ (카드 재발급) 지원 대상자가 배부받은 카드 사용 중 분실, 훼손에 따른 재발급이 필요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경우, 대상자 정보(신분증, 신한카드 기명화 시스템 내 발급 여부) 확인 후 분실·훼손된 기존카드를 사용중지 상태로 전환하고, 보유 중인 선불카드 여유 물량으로 재등록 진행(①~④ 절차와 동일)

- **(지원 대상자)** 에너지공단에서 발송한 대상자 선정안내(문자, 우편)\*에 따라 지정된 카드 수령일 이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 읍·면·동별 지원 대상자 규모를 고려, 1:1 안내(문자, 우편) 시 세대별 카드 수령 시작일을 지정하여 안내 → 순차적 방문을 유도하여 신속·원활한 배부 추진

- **(대리수령)** 수급자의 거동불편, 병원 입원, 섬·벽지 지역 거주 등의 사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서식1] 활용) 작성 후 대리수령 가능

**< 등유·LPG 선불카드 수령 가능한 대리인 유형 >**

구분	유형	위임장 제출
1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불필요
2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경우	필요
3	○ 병원 종사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필요
4	○ 마을 통장, 이장	필요

- 부정 사용 등 방지를 위해 통지받은 지원 대상자가 방문하는 것을 권고하나, 동일 세대원 또는 대리 수령인(→위임장 필수)이 방문·수령도 가능
- 카드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안내하였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요청\*

\* 재발급 요청 이후 수령까지 1~2일 기간 소요 예정

## 2. 등유·LPG 선불카드 사용 및 정산

### 1

#### 등유·LPG 선불카드 사용

□ 사용기간 : 2026. 1. 23.(금) ~ 2026. 5. 25.(월)

- 5. 22.(금)까지 기명화 등록을 완료한 카드에 한해 5. 25.(월)까지 사용 가능
- 카드 잔액은 사용기간 내 ①신한카드 ARS(☎1544-7000), ②에너지바우처 포털, ③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잔액 조회 시 유의사항 : 이용 가능한 채널별로 잔액 조회 기준 시점이 다름

(①신한카드 ARS) 실시간 잔액 조회 가능(카드 뒷면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확인)  
(②에너지바우처 포털 및 ③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전일(前日) 기준 잔액 확인만 가능

- 미사용 잔액은 사용기간 이후에는 사용 불가(카드 자동 정지)하며, 미사용에 대한 지원 대상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지급 가능

\*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거나, 시스템 오류 및 행정착오 등 등유·LPG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 사용방법

- (지원 대상자) 등유·LPG 판매소에서 등유·LPG를 선불카드로 구매
- 난방용 등유·LPG만 구매 가능(차량연료 등 타목적 유류·가스 구매 불가)하며,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 가능
- 단, 카드판매·대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여부 파악 및 사후 조치 시행 예정

#### < (참고) 에너지바우처 부정수급 관련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에너지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 □ 재발급 신청 관리

- (지원 대상자) 수령한 선불카드(잔액 有\*)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방문하여 재발급 요청

\* 잔액이 없는 경우는 재발급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지원금이 없으므로 재발급 신청 불필요

- (읍·면·동) 방문자와 지원대상(수급자)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사 기명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존 선불카드(분실·훼손)는 사용중지 상태로 전환

- 선불카드(무기명 상태) 여유 수량이 있는 경우 : 기존 선불카드 잔액\*을 확인하도록 수급자에 안내하고, 카드사 기명화 시스템에서 재발급 카드 사용자 정보 등록(기명화) 및 인수대장 작성(재발급(사유 포함) 기재) 후에 배부

\* 신한카드 ARS(☎1544-7000)로 연락하여 실시간 잔액 조회

- 선불카드(무기명 상태) 여유 수량이 없는 경우 : 필요한 수량만큼 에너지 공단에 추가 배송(카드사→읍·면·동) 요청\*

\* 추가 배송수량을 수령한 후에 재발급 신청한 수급자에 재방문 요청 → 기존 선불카드 잔액 확인, 재발급하는 카드의 기명화 처리 및 인수대장 작성 후 배부

※ (참고) 선불카드 추가 배송 진행절차(읍·면·동 요청접수 후)

- (에너지공단) 재발급 필요수량 확인 및 카드사로 발송 안내
  -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여유 수량이 있는 경우, 해당 물량을 활용하도록 안내
- (카드사) 재발급 신청 여부 및 수량을 확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카드 발송(요청일로부터 1~2일 소요 예상)
  - 단, 재고 부족으로 신규 제작 시, 읍·면·동 배송 완료까지 7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참고) 재발급 진행 시 기 배부한 선불카드 잔액 조회

- 선불카드 재발급 시 등유·LPG 추가 지원금이 과지급되지 않도록 기 배부한 선불카드(분실·훼손)의 잔액은 재발급 카드로 자동 반영됨(재발급 수령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
- 신한카드 ARS(☎1544-7000) 연락 : 선불카드(분실·훼손) 실시간 잔액 조회
  - 에너지바우처 포털 및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조회하는 선불카드 잔액은 전일(前日) 기준이므로 실제 지원금 잔액과 불일치 할 수 있음

## □ 등유·LPG 카드 사용처 관리

- (에너지공단) 카드사로부터 전국의 등유·LPG 판매소 중 카드사 가맹점 목록을 확보하여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 공지 및 안내

- 기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등유·LPG 판매소와 등유·LPG 선불카드 사용 가능 등유·LPG 판매소 범위가 다르므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지원 대상자에 안내 필요

\* 카드사 제한(선불카드는 신한카드로 한정), 카드사-가맹점 간 계약사항 등

- 등유·LPG 판매소 확인방법 등은 지원 대상자가 선불카드를 수령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제작·배포 예정

### [등유·LPG 판매소 안내 사항]

- ① 난방용 등유·LPG 판매 목적 외에 카드 결제 불가
- ② 카드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카드 결제 불가
- ③ 카드는 분할 결제가 가능하며, 신한카드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
- \* 신한카드 가맹점 확인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④ 등유·LPG 배달 주문 시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 가능

- **(지자체)** 고령층, 거동 불편 등으로 등유·LPG 판매소를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세대에 대해 등유·LPG 지원금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극 지원(직접 방문, 에너지공급사 협업 등\*)

\* [붙임] 에너지바우처 사용 독려 및 찾아가는 복지 우수 사례'(p.34) 참고

- **(카드사)** 난방용 등유·LPG 판매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토록 클린카드 기능\*을 설정하고, 특히 카드 사용의 오용 및 부정행위 등 의심 가맹점 모니터링

\* 투명한 금액 사용을 위해 특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하는 기능

## □ 등유·LPG 카드 사용 정산

- **(에너지공단)** 사업비를 카드사에 예탁 후 지원 대상자가 결제한 내역에 따른 등유·LPG 카드 대금 결제 및 정산 처리

###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 줄여라"...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거동 불편·고령자 등 가구 방문

바우처 사용법 안내·새 발급도



대구 동구청은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구청 직원이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방문해 난방용 등유를 공급하고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하는 모습. <대구 동구청 제공>

- (주요내용) 대구 동구청의 현장중심 적극행정으로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 확대
- (실행방안)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등유공급 업체와 함께 등유배달 및 현장결제 지원
- (성과) 2025년 초 688가구(220백만원)에 달하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가 276가구(88백만원)으로 감소

## □ 예외지급 절차

- (지원 대상자) 등유·LPG 선불카드 사용 기간(‘26.1.23~5.25) 만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는 잔액 범위에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 예외지급 신청 가능

-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상의 착오·지연,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 \* 예 : 등유·LPG 카드결제 시스템의 장애 및 판매처가 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유 등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거동 불편 또는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경우

- 지원 대상자는 '[서식 5]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예외지급 신청

- (읍·면·동) 지원 대상자로부터 받은 예외지급 신청 정보에 대해 사용 잔액, 예외지급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 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시스템에 입력 접수
- (시·군·구)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검토 후 업무포털 시스템에서 승인
- (에너지공단) 예외지급 내역 검토 후 해당 세대에게 예외지급 진행

## □ 예외지급 시기

- 지원금 사용기간 종료 후, 예외지급 신청사항 등 검토 후 지급(‘26.6~8월 예정)



## IV. 주요 서식



**서식 1****위임장****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 수령 [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 재사용 [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 확인 신청 [ ]
------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서식 5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1.20.>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예외지급 사유	<input type="checkbox"/>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행정상의 착오·지연 등 이용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비용 구분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구분 가능(영수증, 고지서) <input type="checkbox"/> 구분 불가		
에너지비용 구분불가 사유 (구분불가 선택 시 작성)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input type="checkbox"/> 종교시설, 공장 등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input type="checkbox"/>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작성 : )		
입금계좌정보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읍·면·동)	
	계좌확인	위 계좌가 입금이 가능한 일반계좌임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b>* 입금계좌 종류가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는 예외지급액 입금이 불가능합니다.</b>	
예외지급신청액	이용권 잔액	신청금액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안내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께서는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다른 세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액은 신청인의 에너지이용권 잔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금액 계산 등은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이용권(가상/실물)이 사용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외지급 신청액(이용권 잔액 및 신청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의 이용권 금액 정보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인 세대 수급자 사망 시 사용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는 예외지급이 불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 사용 안내서**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이하 '등유·LPG 확대지원'이라고 합니다.) 수급자에게서는 본 안내서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이하 '카드'라고 합니다.)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세대에 지원되는 한도액은 총 147,000원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위 한도액까지 난방용 등유·LPG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난방용 등유·LPG 구매 목적 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카드는 수령일 다음 날부터 2026년 5월 25일(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카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4. 카드는 분할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기간 이후에 잔액이 있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등유·LPG 배달 주문 시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6. 이사를 간 경우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재사용 신청 및 승인 완료 후에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간 거주지의 난방환경(등유·LPG 사용) 증빙 필수(보일러실 사진 등)
7. 수급자 사망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원 명의로 수급자 및 카드 사용자 정보를 변경 등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카드를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를 회수하거나 카드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유·LPG 확대지원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카드를 회수하거나 카드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10. 난방용 등유·LPG의 구입이 가능한 판매소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등은 ①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 ②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카드 사용 잔액 조회는 본인카드 뒷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카드사 ARS(신한카드, ☎1544-7000)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카드 사용 잔액 확인	신한카드	1544-7000
수급자·주소 변경 신청	000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사용처	000시·군·구청 000과	
등유·LPG 확대지원 관련 기타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000 시장, 군수, 구청장



---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 · LPG 확대지원 - FAQ (자주 묻는 질문) -

---

2026. 1.



# FAQ (자주 묻는 질문)



# 1. 확대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지원금액 관련

## Q01 에너지바우처 등유 · LPG 확대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이하 “등유·LPG 확대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등유 또는 LPG를 주(主) 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세대에 난방용 등유 · LPG 구입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Q02 난방용 등유 · LPG 구입비용 추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세대로 선정기준일\* 시점에 아래 선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이때 ‘세대’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 선정기준일 : 1차(1/9), 2차(2/20), 3차(3/20), 4차(5/25)

선정 기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		거주지(난방환경) 유지 여부
①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선정기준일에서 최근 구입한 연료가 등유 · LPG	구입일~선정기준일
		등유 · LPG 구입금액이 동절기 총 사용금액의 50% 이상	'25.10.1.~선정기준일
②	'24년도 에너지바우처 (25년도 동절기 사용이력X)	선정기준일에서 마지막 구입한 연료가 등유 · LPG	구입일~선정기준일
		등유 · LPG 구입금액이 동절기 총 사용금액의 50% 이상	'24.10.1.~선정기준일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확인 등을 통해 현재 등유·LPG로 주 난방하는 세대로 파악된 경우		확인일~선정기준일

- 다만, 지원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① 등유·LPG 이용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일까지 **전출입(난방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 등유·LPG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세대**(전입지의 난방에너지원 확인 필요)\*  
\* 단, 전입지의 주 난방에너지원이 등유·LPG로 확인된 세대는 추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②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 바우처를 사용하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이용 세대**
- ③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5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④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5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 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⑥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Q03**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세대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현재 등유 또는 LPG로 주 난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도시가스로 난방하는 세대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세대의 경우,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04**

**차상위계층 세대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등유·LPG 확대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차상위계층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Q05**

**등유 또는 LPG보일러와 연탄보일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지원대상인가요?**

- 복수의 연료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세대의 경우라도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등유 또는 LPG를 이용한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25년 연탄쿠폰을 수급하거나 '25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06**

**등유난로 · LPG 난로를 가지고 있는 세대도 지원대상인가요?**

- 등유 또는 LPG가 주 난방에너지원인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를 지원하므로 별도의 주 난방에너지원(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면서, 보조 난방수단으로 등유난로 · LPG난로를 이용하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세대의 난방에너지원 사용현황을 확인했을 때 다른 난방수단이 없이 부득이하게 주 난방수단으로 등유난로·LPG난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07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 시설(등유 또는 LPG 난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세대원 모두가 시설\*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보장시설급여 수급자) 경우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시설급여 수급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설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Q08

**등유·LPG 사용세대인데 1차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 이번 등유·LPG 확대지원은 선정기준일 시점에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따라서, 1차 선정기준일(1/9)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세대이더라도 2~4차 선정기준일에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5년 바우처(407,500원) 수급 2인세대 / 실물카드 / 거주지 변경 X('25.10.1.~) / '25년 하절기 바우처 200,000원 사용

- 1차 선정기준일(1/9) : 등유·LPG 구입 X, 전기요금 22,500원(1/10) → 미선정
- 2차 선정기준일(2/20) : 등유·LPG 구입 100,000원(최근 구입일 2/12), 전기요금 47,500원(누적, 최근 구입일 2/10) → 지원대상 선정(대상 ①\* 해당)

\* '25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 중 최근 구입연료가 등유·LPG이거나 등유·LPG 구입금액이 50% 이상

Q09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못했는데 등유·LPG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등유·LPG 확대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등유·LPG가 주 난방 에너지원인 세대에 한해 추가 지원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못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기간 : '25.6.9.~'25.12.31.

### Q10 추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등유·LPG 확대지원에 따른 추가 지원금액은 147,000원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없음)

### Q11 등유·LPG 확대지원은 매년 실시하나요?

-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다른 난방에너지원(도시가스, 지역난방 등)과 달리 별도 요금할인이 없는 등 등유·LPG로 난방하는 세대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실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Q12 에너지바우처를 각각 수급하던 1인 세대 A(B세대 주소지로 전입)와 B가 2인세대로 합친 경우, 등유·LPG 구입비 추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등유·LPG 추가 지원금은 세대원 수 구분 없이 수급세대 기준으로 147,000원을 지원합니다.
    - 선불카드 수령 전 : B세대에서만 선불카드 수령 가능
    - 선불카드 수령 후 : A세대(전출입)가 수령한 선불카드 사용 중지\*  
(B세대가 수령한 선불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 선불카드 재사용을 신청하더라도 사용 재개 대상이 아님

### Q13 2인 이상 세대 중 세대원(기초생활수급 자격 有)만 전출입한 경우, 전입한 주소지에서 등유·LPG로 난방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는 등유·LPG 난방 X, 전출입 X)

-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세대원으로 변경하고,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일 시점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 전출하지 않은 기존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14**

**선불카드 사용기간 중 세대원 수가 변동된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지나요?**

- 세대원 수에 관계 없이 147,000원을 지원하므로 선불카드 사용기간 중 세대원 수가 변동되었더라도 지원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Q15**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현금이 아닌 등유·LPG를 구매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Q16**

**선불카드 사용 후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 선불카드 사용기간('26.1.23~'26.5.25.) 만료 이후에 카드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현금으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Q17**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자를 여러 번(1~4차)에 걸쳐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등유·LPG 확대지원은 2025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등유·LPG 구입)<sup>\*</sup> 기반으로 지원대상을 자동 선정합니다. 따라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의 변동성(등유·LPG 사용금액, 수급자 정보변경 등)을 감안하여 등유·LPG로 주 난방을 하고 있음에도 확대지원에서 소외되는 세대가 없도록 여러 번에 걸쳐 대상자 선정을 추진합니다.

\* 2025년도 동절기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는 2024년도 사용이력까지 고려

※ (참고사항) 등유·LPG 확대지원 선정 차수별 지원금 지급방법(수단)

- 1~3차 선정 : 선불카드 (카드 수령 다음 날부터 '26.5월까지 등유·LPG 구입 시 사용 가능)
- 4차 선정 : 예외지급 신청 ('26.5.25.까지의 사용이력으로 선정→카드 사용기간 종료)

## 2. 수급자 선정 관련

Q18

등유·LPG 확대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등유·LPG 확대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등유·LPG 구입)\*을 기반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대상을 자동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 세대에는 개별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현재 거주지의 주 난방에너지원이 등유 또는 LPG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 고려(2025년도 동절기 사용현황/대상 ①)하되, 2025년도 동절기 미사용 세대에 대해서는 2024년도 동절기 사용이력까지 고려(전출입 미발생 조건/대상 ②)
- 다만, 전출입 발생,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 부재 등으로 자동 선정되지 못한 경우로 현재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하는 세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대상(대상 ③)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9

등유·LPG 확대지원 대상자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energyv.or.kr/workp)에 접속하거나, 카드기명화 시스템(energy.rndcard.com)에 접속하여 대상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차수별(1~4차) 선정기준일 시점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므로 조회 시점에 따라 확인 가능한 선정 명단 현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2026.1.21.(수)부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세대에 발송(에너지공단)하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확인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0

**바우처 사용이력은 없지만 난방용 등유·LPG를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한 수급세대(대상 ③)를 발굴한 경우, 지원대상 추가 선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energyv.or.kr/workp](http://energyv.or.kr/workp))에서 지원대상 추가 선정 요청명단을 등록하고 시·군·구에서 승인 완료하면 에너지공단에 지원대상 추가 선정요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지원대상 추가 선정요청 명단은 2월 2주차(예정)부터 상시 등록 가능하며, 등록방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Q21

**대상 ③에 해당하여 지원대상 추가 선정을 요청한 이후에 선정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 시·군·구 승인일로부터 가장 빠른 지원대상 선정 차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시·군·구 승인일 이후에 추가 선정을 요청한 대상자의 수급정보 변경(전출입 등) 발생으로 선정기준일 시점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2

**등유·LPG 보일러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수급세대 주거지에 방문하여 등유·LPG 보일러 및 연료탱크·압력용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별로 이장·통·반장, 사회복지사 등 지역 내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①거주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주 난방에너지원의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②'24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이면서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현장확인 없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과 전화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3

**대상자가 아닌데 등유 또는 LPG를 쓰다며 선불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읍·면·동) 1차 지원 대상자 선정(1/9 기준)의 경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에너지바우처로 등유·LPG를 구입한 이력을 기반으로 자동 선정한 세대로 현재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중임에도 미선정된 세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예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전액 사용 또는 잔액이 있음에도 동절기 사용 이력(2024, 2025년도)이 없는 경우 등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현재 주소지에서 등유 또는 LPG로 주 난방하는 세대임을 지자체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을 통해 추가 선정 요청대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3. 수급자 정보 변경(사망·전출 등) 관련

**Q24**

**카드 사용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 사망시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상에 사망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자동 중지 처리되며, 등유·LPG 선불카드도 함께 연동하여 사용중지 처리됩니다.
-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세대원 변경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하고, 에너지바우처 재신청이 완료되면 등유·LPG 선불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5**

**카드 사용기간 중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가 이사한 집에서도 등유·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며, 등유·LPG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 실물카드를 사용하는 수급자가 전입 시,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 카드는 사용중지 처리됩니다. 전입지에서 주 난방에너지원을 등유·LPG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수급자는 선불카드 재사용 신청서(서식 4)를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수급자의 전입지 난방환경이 등유·LPG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파악한 경우에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등유·LPG 선불 카드 재사용을 신청하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치면, 에너지 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6**

**카드 사용기간 중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기준 시점은 수급세대로 확정통지가 되는 때입니다. 사용기간 중 수급자가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4. 카드 발급 · 사용 관련

### Q24 카드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주황색)' 1가지입니다.

### Q25 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 LPG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받은 선불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선불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등유·LPG 확대지원을 받으시려면 선정된 세대에 개별 발송(에너지공단)한 문자 또는 우편 내용 등을 참고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규 수령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3년도에 배부한 선불카드 재사용 불가)

- ※ (참고사항) 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배부한 체크카드 및 무계좌카드는 녹색, 선불카드는 파란색으로 시각적으로 구분 가능

### Q26 기존에 사용 중인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별도의 선불카드를 배부하는 이유가 있나요?

- 이번 등유·LPG 확대지원은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인상 부담이 높고, 요금 할인 지원이 없는 등유·LPG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금 사용처 제한, 주 난방에너지원 변경 발생 시의 추가 지원금 관리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선불카드로 배부합니다.

- \* 예 : 등유·LPG 선불카드를 수령한 세대가 사용기간 중 전출입으로 주 난방에너지원이 등유·LPG에서 도시가스로 변경 → 추가 지원금 잔액 사용중단 조치

**Q27**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를 어떻게 배부해야 하나요?**

- (읍·면·동) 거동 불편 등으로 수급자에게 선불카드 배부가 어려울 경우, 통·반장, 이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방문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급자에게 실제로 선불카드가 배부되었는지 유선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28**

**선불카드는 언제 행정복지센터로 배송되나요?**

- (읍·면·동) 선불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energyv.or.kr/workp)에 등록된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및 담당자를 수령인으로 하여 총 3회에 걸쳐 분할 배송됩니다. 1차 1/16(10만 장), 2차 1/23.(5만 장), 3차는 1/30(5만 장) 이내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 등록된 담당자 정보 최신화 필요

- 선불카드 반송 등으로 인해 카드배부 지연, 관련 민원 발생 가능

**Q29**

**선불카드 기명화 등록(대상자 배부)은 언제까지 하나요?**

- (읍·면·동) 선불카드 배부일인 2026.1.22.(목)부터 2026.5.22.(금)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자) 방문 수령일을 통보받은 날부터 2026.5.22.(금) 18:00까지입니다.

※ (참고사항) 5/22(금)까지 기명화 등록완료 시 5/25(월)까지 선불카드 사용(결제) 가능

**Q30**

**선불카드는 기명화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읍·면·동) 배송된 카드는 '무기명' 상태의 선불카드이므로 신한카드사의 기명화 시스템(energy.rndcard.com)을 통해 기명화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방문 시 기명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분증 확인을 통해 대상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명화 및 인수대장에 서명을 받은 뒤에 선불카드를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Q31**

**선불카드로 배달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 배달비를 포함한 등유·LPG 구매비용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Q32**

**수급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나요?**

- 수급자 동일 세대원 또는 카드 수령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위임장' 작성 및 제출 필수

**Q33**

**등유 및 LPG 구입 후 선불카드 잔액이 일부 남은 경우, 잔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자) 선불카드 사용 후 잔액이 일부 남은 경우는 해당 카드로 잔액만큼만 결제하고, 차액은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결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결제 가능)

**Q34**

**지정된 날짜에 오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돌려보내야 하나요?**

- (읍·면·동) 지정일 방문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정일과 관계없이 방문한 경우라도 당일 카드 재고가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Q35**

**선불카드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지원 대상자) 선불카드 사용기간 동안 ①신한카드 ARS(☎1544-7000), ②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 ③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시간 잔액 조회는 신한카드 ARS(☎1544-7000)에서만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포털과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조회하는 잔액은 조회일 전일(前日) 기준 잔액임

Q36

**이사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 명단에 있습니다. 지급해도 되나요?**

- (변동사항 : 이사) 대상자의 주소지 기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지의 난방 환경이 등유·LPG인지를 확인한 후 등유·LPG선불카드를 대상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확인(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내 재신청)이 안 되었으면 선불카드 사용 불가
- (변동사항 : 사망) 대상자가 사망하면 선불카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인 이상 세대는 대상자를 세대원으로 변경(행복이음 내 재신청)한 후, 변경된 대상자에게 선불카드 지급이 가능합니다.

Q37

**선불카드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읍·면·동) 지원 대상자가 카드 분실·훼손으로 인해 재발급 요청 시 방문자의 신분증, 신한카드 기명화 시스템 내 발급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기 배부한 선불카드는 사용중지 상태로 전환(전입에 따른 확인 불가 시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로 확인 필요)합니다.
  - 읍·면·동에서 보유 중인 기명화 하지 않은 선불카드 여유분이 있는 경우, 기명화 시스템에 해당 카드로 변경등록\*하고 인수대장 서명을 받은 후에 배부하시면 됩니다.  
\* 신한카드 ARS(☎1544-7000)를 통해 사용중지한 기 배부 선불카드 잔액 조회 필수
  - 선불카드 여유분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추가 선불카드 배부가 필요하므로 에너지공단에 추가 배부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일로부터 읍·면·동으로 배송완료까지 약 1~2일 소요 예상
- (지원 대상자)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38

**사용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원이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대상자가 사망하면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다만, 2인 이상 세대는 대상자를 세대원으로 변경(행복이음 내 재신청)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선불카드를 인계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액을 제외한 잔액만큼 사용 가능)

Q39

**수령한 선불카드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 카드사용은 기명화 완료일자 기준 +1일 정도의 근무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카드 수령일자 기준 다음 날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사용기간(26.1.23.~5.25.) 내 반드시 사용, 기간만료 시 선불카드 사용 불가

Q40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선불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 (지원 대상자) 우선 ①카드 잔액을 신한카드 ARS(☎1544-7000)로 연락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②잔액이 없는 경우 가지고 계신 선불카드는 자체 폐기하면 됩니다.

Q41

**읍·면·동에서 보관 중인 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 (읍·면·동) 선불카드 여유분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추가 선불카드 배부가 필요하므로 에너지공단에 추가 배부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 재고가 있는 경우는 요청일로부터 읍·면·동 배송완료까지 약 1~2일, 재고 부족으로 신규 제작하는 경우는 7일 내외 소요 예상

- 인근 읍·면·동 여유 수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을 활용하도록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2

**기명화 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인데 기 등록된 카드라고 조회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읍·면·동) 다른 선불카드로 우선 등록 후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에너지 바우처 업무포털에 접속하여 기 등록된 카드로 조회된 카드번호를 재 조회하여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카드가 이미 등록(기명화 처리)된 카드로 확인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공무원 전용, ☎1600-3192)로 연락하여 해당 카드번호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인 확인\* 및 조치사항에 대해 연락드리기 전까지 해당 카드는 별도 보관(폐기, 배부 X)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른 카드 배부 시 기명화 입력 실수, 일시적 시스템 오류 등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 카드사 확인·조치 등에 시간 소요

## 5. 예외지급 관련

### Q43 예외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 관련 예외지급은 에너지바우처와 동일합니다.
  1.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2. 행정상의 착오·지연,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3. 거동 불편 또는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 Q44 예외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26.5.25.까지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개인별 선불카드 사용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 예외지급('26.6월~8월 예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Q45 난방비가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않아 카드를 쓰지 못한 경우 예외지급이 되나요?

- 난방비가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라면 예외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지급이 가능한 경우라도 난방비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리비 고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Ⅲ. 등유·LPG 확대지원 시스템 매뉴얼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시스템 매뉴얼

2026. 1. 6.



## ★ 시스템 매뉴얼 개요(2026. 1. 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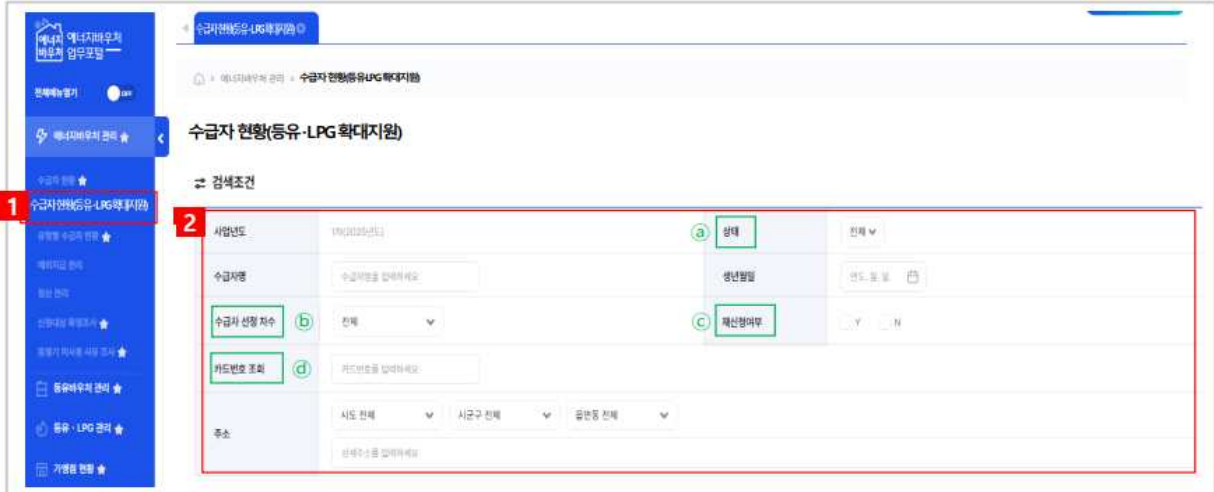
2

※ 향후 시스템 변경 발생 시, 업무포탈 게시판을 통해 업데이트 예정

- 업무포탈 시스템을 통해 등유·LPG 확대지원 수급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체 수급자는 ① 자격요건 충족자(기준일 시점 선정), ② 지자체에서 발굴한 수급자로 구성  
- 수급자의 상태는 現기준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됨

< 現기준 자격 충족 여부에 따른 수급자 상태 >

수급자 상태	설 명	카드결제 가능여부	지자체 확인사항
<b>【자격 충족】</b>	▪ 등유·LPG 수급자	-	-
카드미발급	- 카드 미발급 상태	결제불가	▪ 카드수령 독려 안내
카드발급(미사용)	- 카드 발급, 바우처 미사용 상태	결제가능	▪ 바우처 사용 독려 안내
카드발급(사용)	- 카드 발급, 바우처 사용 상태	결제가능	▪ 부정사용 등 점검
<b>【자격 미충족】</b>	▪ 등유·LPG 이용 확인이 필요한 자	-	-
중지	① 중지 사유가 가상카드 전환, 전출입 - 선정일(발굴일) 이후, 現 기준 수급자의 등유·LPG 이용 여부 확인 필요한 상태	결제불가	▪ 現 추단방향이 등유· LPG인지 확인한 후, 재신청(사용재개) 필요 ※ 업무포탈 내 재신청
	② 중지 사유가 "①" 이외 (사망, 본인포기 등)	결제불가	▪ 대상자 변경 등 재신청 (사용재개) 필요 ※ 행복이음 내 재신청
재신청(읍면동)	- 읍면동에서 現 기준 수급자의 등유·LPG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재신청(사용재개 신청)한 상태 ※ 시군구 검토가 필요하며 시군구 에서 승인할 시 수급자는 자격 충족 상태로 변경됨	결제불가	▪ 읍면동이 신청한 재신청 내역을 시군구의 검토 필요



1. [에너지바우처 관리] 하위 메뉴의 [수급자 현황(등유·LPG 확대지원)] 접속
2. 수급자명, 상태 등 조회조건을 설정하여 등유·LPG확대지원 수급자 현황 조회 가능
  - ⓐ 상태 : 카드 발급, 카드 미발급, 중지 등 수급자 상태를 선택하여 조회 가능
  - ⓑ 수급자 선정 차수 : 수급자 선정 차수를 선택하여 조회 가능
  - ⓒ 재신청 이력여부 : 등유·LPG 재신청(사용재개 신청)이 완료된 수급자를 선택하여 조회 가능
  - ⓓ 카드번호 조회 : 선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



1. 조회 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 를 클릭 시, 조건이 충족된 수급자가 조회됨([초기화]는 기존 설정 값을 초기화)
2. 조회 조건에 따른 총괄 통계표를 확인할 수 있음(전체 세대 수, 총 발급액 등을 확인)
3. [엑셀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조회된 전체 수급자의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4. 일부 중지 상태\*의 수급자는 읍면동의 [재신청] 클릭을 통해 사용재개 가능(다중 선택을 통한 일괄 재신청 가능)
  - \* 수급자 선정(발급) 후, 사용방식을 요금차감으로 변경하거나 전출입(실물카드)이 발생한 수급자
5. [수급자명(ex. 홍길동)]을 클릭할 시, 수급자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2 '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수급자 상세정보

5

수급자 상세정보(등유·LPG 확대지원)

수급자 정보 | 등유·LPG사용 현황 | 카드 발급 현황 | 카드 사용내역 | 자격변동내역 | 전출입자내역

수급자 정보

신청접수번호	대상자ID	
수급자명	생년월일	
과대표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세대원주소		
세대원주소	세무원 확인	
상태	선정 차수	1회
안내 수단	안내(예정)일자	

1. 수급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 신청접수번호, 세대원 특성 등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정보와 동일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 상태 : 現 기준, 등유·LPG 대상자격 충족 여부, 재신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선정 차수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수급자로 선정된 차수를 확인할 수 있음
- ㉣ 안내 수단 : 수급자 선정 결과 등을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수단(문자, 우편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안내(예정)일자 : 선정 결과 등을 수급자에게 안내하였거나 안내 예정인 일자를 확인할 수 있음

## 2 '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수급자 상세정보

6

등유·LPG사용 현황

지원금액	0원	사용액	0원	잔액	0원
------	----	-----	----	----	----

카드 발급 현황

번호	발급여부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발급일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카드 사용내역

번호	사용일자	카드번호	가맹점	사용금액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격변동내역

변동일자	변동사유	상세사유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출입자내역

번호	전입일자	전입처리일자	전입지 주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1. 등유·LPG 지원금액, 사용액, 잔액을 확인할 수 있음
2. 카드 발급 현황(사용중지 상태 등), 카드 사용내역(바우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3. 등유·LPG 수급자의 자격변동내역(중지, 재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지) 사망 등 기존 바우처 중지 체계 및 신규 중지 (가상카드 전환 중지, 전출입(실물카드) 중지)
  - (재신청) 기존 바우처 재신청 체계(행복이음 내) 및 신규 중지에 대한 재신청(업무포털 내) 추가
4. 수급자의 전출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1** 에너지바우처 이용금액 (단위: 원)

구분	이용권 금액	사용 금액	잔액
바우처		189,062	
목달기	295,200	125,138	170,062
합계	295,200	295,000	200

**에너지바우처 이용내역** (단위: 원)

번호	구분	사용일자	제급기관	사용액	카드종류	카드번호
1	바우처	2025-07-25	한국전력공사	26,235		
2	바우처	2025-08-26	한국전력공사	71,966		
3	바우처	2025-09-25	한국전력공사	71,861		

**2** 재신청 목록

1. 등유·LPG수급자의 확대 지원액외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발급액, 사용액 등)을 파악할 수 있음
2. 일부 중지 상태\*의 수급자에 한해 [재신청] 버튼이 활성화되며 해당 버튼 클릭을 통해 사용을 재개할 수 있음
  - \* 수급자 선정(발굴) 후, 사용방식을 요금차감으로 변경하거나 전출입(실물카드)이 발생한 수급자
  - 재신청 버튼은 상세정보 화면, 수급자현황 화면 두 곳에 존재(단, 재신청이 가능한 건의 차이가 존재)
    - 1) (상세화면 내 재신청) 상세화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단 건만 재신청할 수 있음
    - 2) (현황화면 내 재신청) 조회된 목록에서 수급자를 다중 선택하여 복수의 건으로 재신청할 수 있음

# **IV. 선불카드 기명화 시스템 매뉴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등유·LPG지원 선불카드  
운영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지자체공무원 >>  
(도메인 : <https://energy.mdcard.com>)

# 꼭! 기억해 주세요!!

## 1. 사안별 문의처

### 시스템 관련 문의

☎ 지자체공무원 전용



시스템 전담 콜센터

 **1566-0369**  
shcall03@shinhan.com

※ 카드 이용관련 고객 안내 및 상담 불가

### 카드이용 관련 문의

☎ 고객용 (지원금 대상자)



신한카드 대표 콜센터

 **1544-7000**

※ 시스템 관련 안내 및 상담 불가

# 꼭! 기억해 주세요!!

## 2. 시스템 접속 정보

접속 URL : <https://energy.rndcard.com>

ID

**배포파일 참조**

초기  
PASSWORD

**Rnd2014**

PASSWORD  
분실및초기화

**1566-0369**

3

## 시스템 소개

### 1. 시스템 개요

- 가. 접속 URL(주소): <https://energy.rndcard.com>
- 나. 사용권한: 한국에너지공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 계정(ID): 신한카드에서 각 담당자별 ID 생성하여 전달
- 라. 암호: 모든 담당자는 최초로 로그인할 때, 향후 사용할 개인별 암호로 변경

☞ 최초 Password : Rnd2014

마. 시스템 주요 기능

- 1) 대상자 등록 및 조회, 카드충전 (충전/한도회수), 전출관리

바.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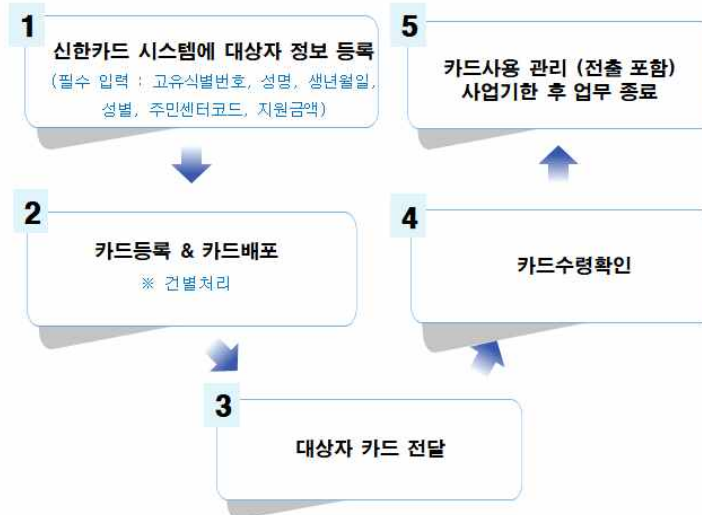
- 한국에너지공단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카드를 배포해야 함
- 잔액은 사업종료 이후 회수 예정일에 운영 계좌로 회수 예정

### 2. 주요 추진일정

- 가. 2026.01.16 ~ : ID/Password 배포 및 시스템 오픈
- 나. 2026.01.22 ~ 05.22 : 선불카드 교부 및 카드 등록
- 다. 2026.05.25 까지만 선불카드 사용 가능 (5.26일 자정 이후 카드 자동정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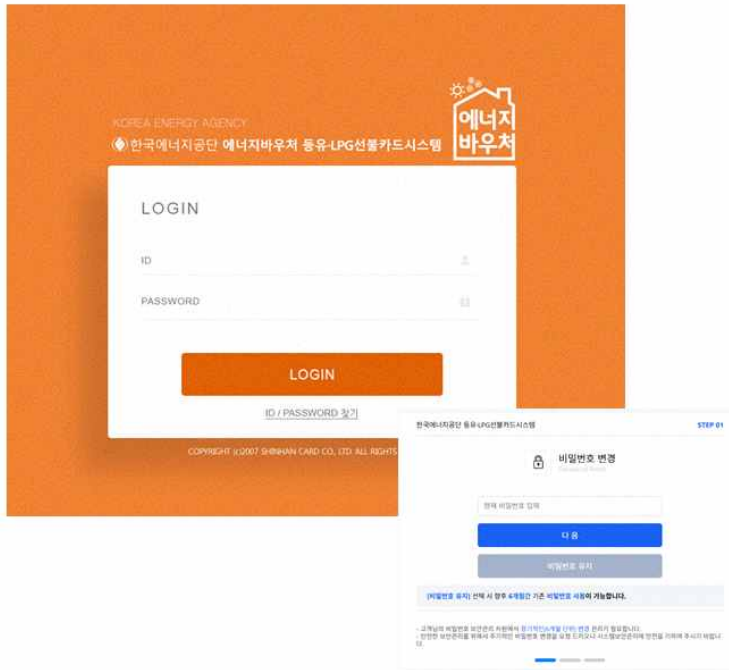
## 신한카드시스템 (<https://energy.rndcard.com>)



## 시스템 사용 안내

1. 로그인
2. 대상자관리
  - 전출대상자 관리
  - 카드재발급 교체 관리
3. 카드등록
4. 전입관리
5. 가맹점리스트
6. 동주민센터정보

# 시스템 사용 안내 (1) 로그인



### 1. 접속 URL (사이트 주소)

☞ https://energy.rndcard.com

### 2. 주요내용

계정(ID) : 담당자별 부여

최초 로그인 암호(PASSWORD) : Rnd2014

※ 대·소문자 구분함 (R'만 대문자)

### 3. 비밀번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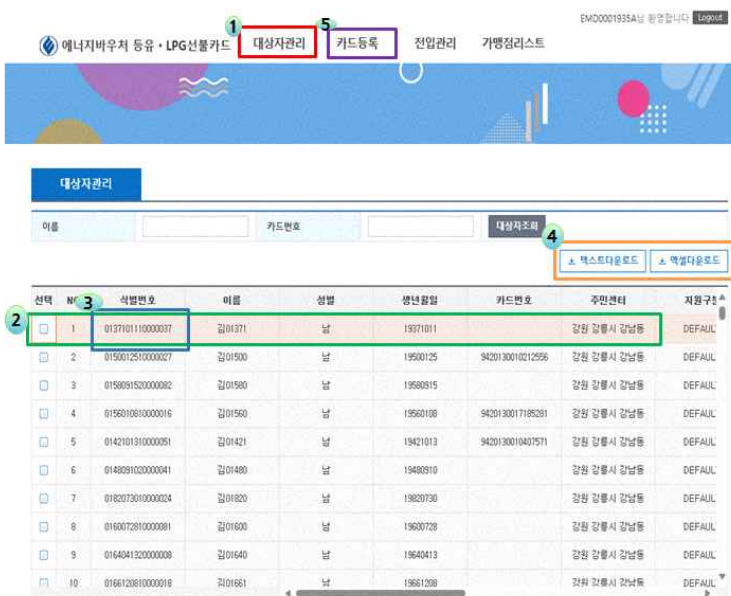
담당자는 최초 로그인시,

e-mail 인증 이후

향후에 실제로 사용할 암호로 변경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시스템 사용 안내 (2) 카드등록 (1)



### ▶ 선불카드 발급 대상자 확인 (1)

1. 대상자 관리 (1) : 등록된 대상자를 확인 (2)

2. 대상자 식별번호 확인 (3) : 식별번호 확인 및 복사

3. 텍스트/엑셀 다운로드 기능 (4) : 텍스트다운로드 : 전 건 다운로드 가능  
- 엑셀 다운로드 : 1만 건까지 다운로드 가능

4. 카드 등록 메뉴 선택 (5) : 배부할 대상자의 식별번호 복사 및 엑셀다운  
- 대상자에게 배부할 선불카드 준비

※ 카드 등록 메뉴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시스템 사용 안내 (2) 카드등록 (2)

The screenshot shows the '카드등록' (Card Registration) menu selected in the top navigation bar. Below the menu, there is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lumns: 식별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카드번호 (Card Number), 카드번호확인(숫자자리) (Card Number Confirmation (Number of Digits)), 저장여부 (Save), and 결과 (Result).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and a '저장' (Save) button is visible at the bottom right of the table area.

### ▶ 바우처 선불카드 발급 대상자 확인 후 카드 기명화 등록 (1)

1. '카드등록' 메뉴 선택 (1)
2. 식별번호 (16자리) / 카드번호 (16자리) 및  
카드번호 확인용 (8자리) 입력 (2)

※ 대량으로 카드정보 등록시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1) 블록복사 2) 붙여넣기를 활용  
혹은  
등유LPG선불카드시스템창을 2중으로 열고  
활용하여 1) 블록복사 2) 붙여넣기를 활용  
하시면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사용 안내 (2) 카드등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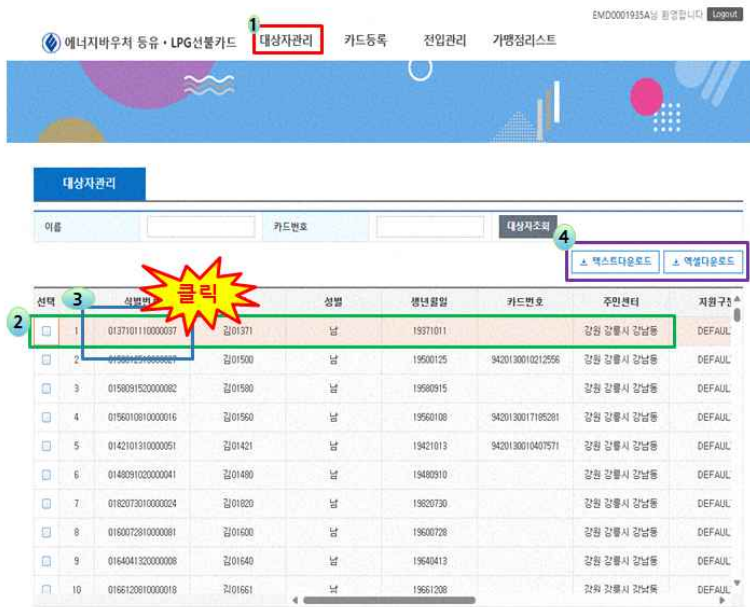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카드등록' (Card Registration) menu selected. The table now contains one row of data: 식별번호 (01500915000000000000), 카드번호 (17388580), 카드번호확인(숫자자리) (17388580), 저장여부 (성공), and 결과 (카드가 등록되었습니다.). A '저장' (Save) button is highligh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table area.

### ▶ 바우처 선불카드 발급 대상자 확인 후 카드 기명화 등록 (2)

1. '카드등록' 메뉴 선택 (1)
2. 식별번호 (16자리) / 카드번호 (16자리) 및  
카드번호 확인용 (8자리) 입력 (2)
3. 저장 (3)
4. 결과값 확인 (4)

※ 대량으로 카드정보 등록시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1) 블록복사 2) 붙여넣기를 활용  
혹은  
등유LPG선불카드시스템창을 2중으로 열고  
활용하여 1) 블록복사 2) 붙여넣기를 활용  
하시면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사용 안내 (3) 대상자 관리 / 전출대상자 관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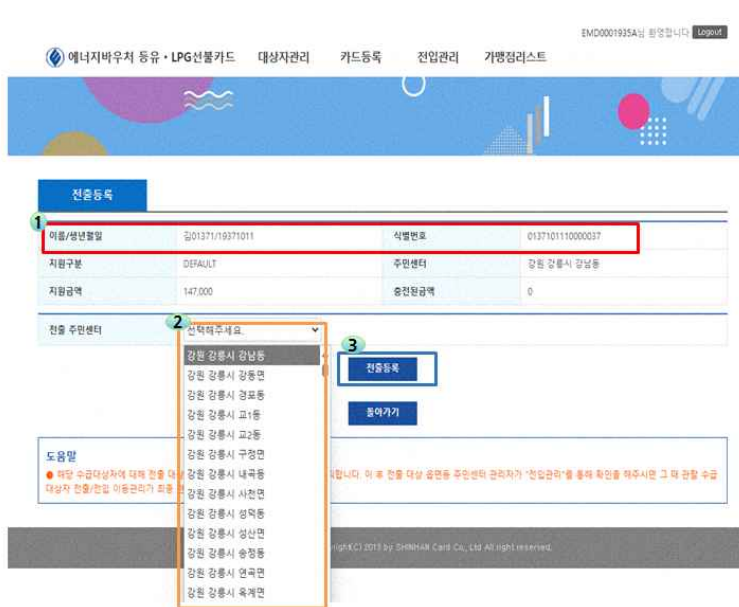
## ▶ 선불카드 발급 대상자 관리 (1)

1. 대상자 관리 (1) : 등록된 대상자를 확인 (2)
2. 대상자 전출 (3)
  - 식별번호 클릭
  - 대상자가 전출(이사) 가는 주민자치센터 정보 확인 후 선택 (상세내용 후면참조)
3. 텍스트/엑셀 다운로드 기능 (4)
  - 텍스트다운로드: 전 건 다운로드 가능
  - 엑셀 다운로드: 1만 건까지 다운로드 가능

## 참고. 선불카드 번호(정보) 수정 / 삭제

- 권한: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담당자,
- 대상자 식별정보와 카드번호 정보 오류 입력 시 삭제가능
- 해당 업무는 에너지공단과 협의 후 처리함

# 시스템 사용 안내 (3) 대상자 관리 / 전출대상자 관리(2)



## ▶ 선불카드 발급 대상자 관리 (2)

1. 전출대상자 확인 (1) : 이름/생년월일/식별번호 확인
2. 전출대상 주민센터 선택 (2)
  - 시군구(동) 주소 확인 ("가나다" 순)
  - 전출대상자의 전출(이사) 가는 주민자치센터 정보 확인 후 선택
3. 전출등록 확정 (3)
  - 정보 확인 후 "전출등록" 확정 합니다.

# 시스템 사용 안내 (3) 대상자 관리 / 카드재발급 교체(1)

선택	NO	식별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카드번호	지원구분
<input type="checkbox"/>	1	013710111000037	김이371	남	19371011		DEFAULT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0150012510000327	김이500	남	19500125	9420130010212556	DEFAULT
<input type="checkbox"/>	3	0158091500000082	김이580	남	19580915		DEFAULT
<input type="checkbox"/>	4	0156071010000016	김이560	남	19560710	9420130017185281	DEFAULT
<input type="checkbox"/>	5	0142101310000051	김이421	남	19421013	9420130010407571	DEFAULT
<input type="checkbox"/>	6	0148091020000041	김이480	남	19480910		DEFAULT
<input type="checkbox"/>	7	0182073010000024	김이820	남	19820730		DEFAULT
<input type="checkbox"/>	8	0160072810000081	김이600	남	19600728		DEFAULT
<input type="checkbox"/>	9	0164041320000008	김이640	남	19640413		DEFAULT
<input type="checkbox"/>	10	0166120810000018	김이661	남	19661208		DEFAULT

## ▶ 선불카드 재발급 교체 관리 (1)

1. 대상자 관리 ( ) : 등록된 대상자를 확인 ( )
2. 대상자 카드번호 확인 ( )  
- 카드번호 클릭  
- 대상자가 배포 등록된 카드번호 확인 후 새로운 카드로 변경 등록 하는 화면 이동 (상세내용 후면 참조)

# 시스템 사용 안내 (3) 대상자 관리 / 카드재발급 교체(2)

순번	시간	카드번호	종류	금액	결과
1	2026-01-08 07:00:00	9420-1300-1021	카드정지	147,000 원	

## ▶ 선불카드 재발급 교체 관리 (2)

1. 대상자 확인 ( ) : 이름/생년월일/식별번호/카드잔액 확인 : 정지 혹은 교체할 구(舊) 카드번호 확인
2. 카드 사용 정지/해제 ( ) : 카드정지 혹은 카드정지 해제를 통해 카드사용 기능을 관리함
3. 신규 카드 교체(재발급) ( )  
- 교체 재발급할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번호 확인 번호 재입력 (8자리)
4. 카드교체 확정 ( )  
- 카드번호 교체 발급 확인 / 확정

## 시스템 사용 안내 (4) 전입관리

### ▶ 전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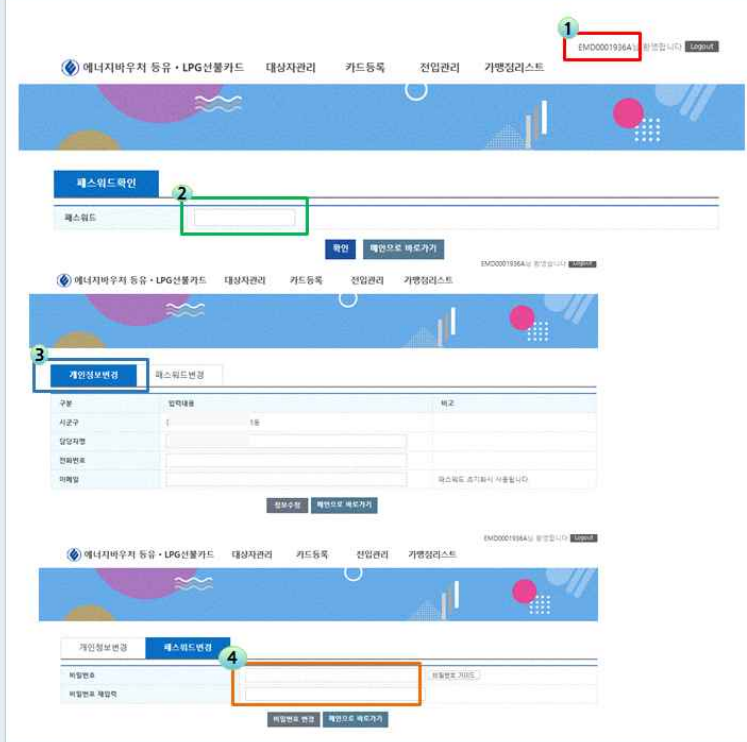
1. '전입관리' 메뉴 선택 (1)
2. 식별번호/카드번호 입력 (2)  
- 명단이 소수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함
3. 식별번호 "클릭" (3)
4. 전입승인/승인 취소 확인 (4)  
대상자

전입이력이 다수인 경우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기능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 시스템 사용 안내 (5) 가맹점리스트

### ▶ 가맹점 리스트

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정보 명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주민센터 정보 확인/수정

1. 접속 아이디 클릭 합니다. (1)
2. 패스워드 재확인 입력 합니다. (2)
3. 동주민센터 담당자 정보 및 연락처 정보를 확인 수정 합니다. (3)
4. 필요시 패스워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



# 감사합니다